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21 선고 2020가단365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제

담당변호사 최원준,손양곤,정영덕,오재훈,최진수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형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주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9. 10. 1.자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부터 2020.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에게,

가. 피고 C, 피고 D, 피고 E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1795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E은 피고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17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10. 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30.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F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0.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회사는 2019. 5.경 원고에게 2019. 10.말경까지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9. 10. 7. 위 계약금을 2020. 5.말경까지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월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회사는 201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하 위 피고들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3/4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5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가, 2019. 10. 1.자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홍등기소 2019. 10. 17. 접수17953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D가 보유하고 있던 1/4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9. 10. 17.접수 제179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반환을 약속한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까지의 미지급이자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재정난에 시달려 오다 2019. 10. 1.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나머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해제는 취소되어야 하고, 위 피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인은 피고회사이나 대출금 확보 등 목적으로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인바,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소외 G는 선의이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회사에 대한 약정금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31,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9. 10. 1.자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회사와 수익자인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피고 D와 전득자인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 역시 구하고 있으나,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회사에 대한 약정금 반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원금 및 이자 합계 31,000,000원 및 그 중 원금인 3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일인 2020. 5.말이 경과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사해행위취소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2019. 10. 1.에는 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2019. 5.경 위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이후 위 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매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이라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넘어갔던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하여 매도인이 그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하여 매도인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76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올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나머지 피고들 및 H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G와 사이에 2019. 3.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이후인 2019. 5. 10.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나머지 피고들이 2019. 7.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회사에게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3/4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합의해제는 피고회사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쌍방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쌍방 내지 어느 일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독립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다면 이 사건 합의해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와 협업으로 제품생산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인데, 위 I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이전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는 취지로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는데 있어 동기에 불과할 뿐이어서 가사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약해제에 있어서 일방의 의무불이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의하면, 피고회사의 2019. 7. 2.자 이사회 의사록에 '피고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7. 10.까지 이전한다(추후 평당 5만원 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회의록 및 2019. 9. 16.자 이사회회의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평당 5만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위 I와와의 협업 성공시 나머지 피고들이 지급받을 금액(즉, 투자에 대한 대가)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사 피고들이 위와 같이 '평당 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일방의 의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1)

(3) 이 사건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 및 피고회사가 채무초과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합의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합의해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수익자인 나머지 피고들(피고 E은 전득자의 지위에도 해당한다)의 악의는 추정된다.

(4) 나머지 피고들의 선의여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위 피고들과 채무자와의 관계, 앞서 본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나머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선의라는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 C, 피고 D, 피고 E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의 지위에서 피고 E은 피고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1795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수익자의 지위에서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9. 10. 17. 접수17953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E과 피고 D 사이의 2019. 10. 1.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선주

1)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구두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 피고회사 이사회의사록만을 근거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본 사건에서 있어, 위 의사록에 당사자 일방의 의무불이행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합의해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